

「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」를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8월 28일

산업통상부장관

「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현금지원 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감액, 환수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지원기업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현금지원제도를 고도화하고 정부조직법 개정(법률 제21065호, 2025.10.1.) 등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고용 외 투자도 연장(2년 범위)가능하도록 연장제도 개선(요령 제3조 제1항 제6호 및 제18조 제5항, 개정)

나. 현금지원 평가 절차 보완(요령 제8조 제7항 제3호, 신설)

- ① 입증 가능한 자료기반(보도자료, 논문자료 등)의 투자계획서 작성원칙 제시로 공정한 평가 기준 수립 및 평가 결과의 수용성 제고
- ② 현금지원 평가 참여자(평가위원, 신청인 등)의 위반행위* 제한

* 자료유출, 의사개입, 사적 이해관계 신고·회피 의무위반 등

다. 현금지원금 감액·환수 등 처분절차 보완(요령 제20조 제2항 내지 제4항, 개정)

① 처분 전 의견제출 기한(14일 이상) 부여로 의견수렴 절차 강화

② 기관별(국가, 지방자치단체)로 상이한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통일해 일관된 환수 업무 추진

* (현행) 산업통상부 15일, 지방자치단체 15~180일 → (개정) 산업통상부 등 30일
라. 타 부처(법제처, 행정안전부) 법령 개정요구 사항 반영(요령 제2조 등,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 3

나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4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2026. 09. 18.(금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투자유치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※ 연락처 및 주소 : 044-203-4087 /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
세종청사 13동 3층 투자유치과(우 30118)

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

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본문 중 “순증되는”을 “순증가 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신청인이 당초 계획한 투자 및 고용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완전 이행으로 현금지원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불이행이 확정된 때 역시 투자기간의 완료로 본다.

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7. “사업 영위기간“은 제6호에 따른 투자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. 이 경우 투자기간 중 이행한 투자 및 고용실적을 유지하면서 해당 현금지원 대상 사업을 지속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입증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은 투자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후단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평가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공정성을 해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제1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, 제4항 및 제5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각각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은 현금지원건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

은 조 제3항 중 “제3조제1항제4호”를 “제3조제1항제6호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”를 “산업통상부장관에”로,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후단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 대신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(제20조 제2항에 따른 이행촉구 기간을 포함한다.)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연장된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견적서 징구”를 “견적서를 받는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본문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, “일정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 촉구, 소명절차”를 “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, 14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여 소명절차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소명 절차에는 제18조 제5항에 따른 연장 요청을 포함한다.

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이행 촉구 또는 소명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신청인이 현금지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스스로 요청하는 경우

2. 사업영위기간 종료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

3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2항에 따른 촉구기간 종료 이후 환수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1조 중 “산업통상자원부장관”을 “산업통상부장관”으로, “2026년 1월 1일”을 “2027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제3조, 제14조, 제18조,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종전 고시를 적용하여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적용한다.

다만, 체결한 현금지원 계약의 내용이 위 개정규정보다 더 기업에게 유리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기타) 별표1,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범위) ① (생략)	제2조(적용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</u> 이 외국인투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 <u>산업통상부장관</u> ----- ----- ----- ---
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“증설투자”라 함은 국내에 공장시설등을 증설하는 경우로서, 공장시설등의 연면적, 고용 등이 <u>순증되는</u>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공장시설등을 분리하거나 합병 등의 방법으로 공장시설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기존 국내 공장내 제조시설의 신규·추가 설치가 가능한 유희면적에 공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증설투자	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순증가 되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

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
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영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
규정한 “그 밖에 산업통상자원
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
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~ 13. (생략)

④ 투자계획서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,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⑤ (생략)
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, 다만,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현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

통상부장관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_____
_____ 산업통상부장
관 _____
_____.

1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. 다만,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입증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내용은 투자계획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산업통상부장관

⑦ 산업통상부장관-----

날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현금지원 신청서의 평가를 거쳐 제10조에 따른 현금지원 한도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,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재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협상) ①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금지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.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,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상담 또는 협상(이하 “협상“이라 한다)을 담당할 공무원(이하 “협상담당자“라 한다)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

----. -----

-----.

제7조(협상) ① -----

-----.

-- 산업통상부장관-----
-----.

② -----
----- 산업통상부
장관-----

트매니저 지정을 대한무역투자
진흥공사의 장에게 요청하여야
한다.

③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산업통
상자원부장관은 즉시 관련 지방
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
고 협상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하
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8조(신청서의 평가) ① 산업통
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별표
1의 평가표에 따라 고도기술수
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, 고용
창출규모, 국내투자와의 중복여
부,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
영향,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
평가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
항에 따라 기술적 평가·재무적
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하여
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
있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
2조제1항제4호 라목상의 외국
인투자에 따른 현금지원 신청에
대해 신청인의 재무상태 확인을

----.

③ ----- 산업통
상부장관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신청서의 평가) ① 산업통
상부장관-----

-----.

②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.

③ 산업통상부장관-----

위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전 별 표1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 인정액 재투자 평가표에 따른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에 대한 사전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의결내용과 현금지원협상안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.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종합평가점수 및 현금지원 적합 여부를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.

⑥ 신청인은 제5항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15일 이내에 기술적 평가, 재무적 평가, 산업적 평가를 위해 필요한 중요 자료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계획서를 보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.

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-----.

④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⑤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⑥ -----

-----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⑦ 산업통상부장관-----

경우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
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제9조(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)

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
위원회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
여 7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
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
에서 호선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산업통상자원
부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
위원회의 위원을 각 호의 자중
에서 위촉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④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산업통
상자원부 협상담당자로 한다.

⑤ · ⑥ (생략)

⑦ 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
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
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평가와
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관련
된 정보의 유출 등 공정성을
해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
는 경우

제9조(평가위원회의 구성·운영)

①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② ----- 산업통상부 --
-----.

③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산업통
상부 -----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없으며, 비밀보장각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실태조사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타 평가위원회 및 한도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 제27조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제3항의 사전평가위원회를 신청기업의 재무적 평가를 위한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평가위원의 평균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 중 1/2 이상의 찬성으로 재무상태 적합여부를 결정한다. 그 외 사전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⑪ (생략)

----- 산업통상부장관-----
-----.

⑧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⑨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⑩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⑪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현금지원 한도산정) ① (생략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현금지원 한도산정을 위하여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(이하 “한도산정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3항의 관련 전문가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.

⑤ 현금지원의 한도산정에 참가한 위원은 산정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, 비밀보장각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~ ⑧ (생략)

제11조(현금지원의 결정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평가위원회 및 한도산정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금

제10조(현금지원 한도산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산업통상부장관-----
--.

⑤ -----

----- 산업통상
부장관-----
--.

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현금지원의 결정) ① 산업통상부장관-----

지원건의서를 작성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2조(계약의 체결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현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신청인과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령 등 관련법령을 현금지원계약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18조제1항의 기간은 회계연도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15조(사전심사 절차) ①·② (생략)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현금지원건의서를 재정경제부장관, 기획예산처장관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계약의 체결) ① 산업통상부장관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제3조제1항제6호 -----

-----.

제15조(사전심사 절차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
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현금
지원 가능 여부와 현금지원 한
도의 상한과 하한을 포함한 심
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에 통보하여야 하며, 산업통상
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한
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심
사 결과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제17조(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조
치 등) ① 제16조에 따라 사전
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전심사
신청인이 법 제14조의2제1항에
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
기 위해서는 영 제20조의3제1항
의 현금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
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
며,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
진흥공사의 장에게 상담을 신청
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8조(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
등) ① 신청인은 매년 별지제2
호 서식 현금지원계약 이행 보
고서 및 제3호 서식 현금지원금

③ -----

----- 산업통상부장관에 --
----- 산업통상부
장관은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조
치 등) ① -----

----- 산업통상
부장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
등) ① -----

산업통상부

[illegible]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

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 대신 고용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⑥ · ⑦ (생략)

⑧ 법 제2조제1항제4호 라목에 따라 현금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은 현금지원 계약 체결 즉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금액을 별도 계좌로 설정해야 한다.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한정하여 외국인투자 금액으로 보고,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.

제19조(신청인의 책무) ① · ② (생략)

③ 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

에도 불구하고,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 대신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(제20조 제2항에 따른 이행촉구 기간을 포함한다.)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연장된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로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⑥ ·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

----. 산업통상부장관 -----

----.

제19조(신청인의 책무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, 공
인감정평가, 2개 이상의 견적서
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
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
결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20조(취소·철회·감액·환수)

① (생 략)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
지원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, 현
금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, 지
급한 현금지원금을 환수하는 경
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계약의
이행 촉구, 소명절차를 거쳐야
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현금지원
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요청
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
다.

<신 설>

----- 견적서
를 받는 -----
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취소·철회·감액·환수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산업통상부장관-----

-----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
여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고, 14
일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
여 소명 절차---. 이 경우 소명
절차에는 제18조 제5항에 따른
연장 요청을 포함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이행 촉구 또는 소명 절
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신청인이 현금지원 계약의
해제 또는 해지를 스스로 요
청하는 경우
2. 사업영위기간 종료로 계약이

	<u>행이 불가능한 경우</u> 3.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<u>절차를 거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4. 제2항에 따른 촉구기간 종료 <u>이후 환수통지를 받은 신청인 은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</u>
제21조(재검토기한) <u>산업통상자원 부장관</u>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<u>2026 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 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.	제21조(재검토기한) <u>산업통상부장 관</u>----- ----- ----- <u>2027</u> <u>년 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